

항공안전본부 훈령 제39 호(2004. 3. 3)

국제항공안전기획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국제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·평가를 지원·조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및 미연방항공청(FAA)등 국제기관과의 연결창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(이하 "국제항공안전기획단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기획단에는 단장 1인을 둔다.

②단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안전본부 4급 이상 공무원중에 지정한 자가 겸직한다.

제3조(구성) ①기획단의 단원은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②항공안전본부장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전문 인력의 활용 등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기획단에 파견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업무분장) ①단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제항공안전의 점검·평가에 관한 총괄창구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국제기준 등 최신 항공안전 자료의 수집·전파
3. 국제표준과의 차이분석 및 전파
4. 선진항공안전제도 연구·개발
5. 기타 국제협력과 관련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5조(수당 등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 : 기획단에 파견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

구분	계	2-4급	4·5 -5급	6급 이하
인원	6	1	1	4

항공안전팀 설치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항공안전감독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(이하 “항공안전팀”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항공안전팀의 설치) 항공안전감독 업무의 총괄·수행을 위하여 운항기술국에 항공안전팀을 둔다.

제3조(조직) ①항공안전팀은 팀장 1인과 팀원으로 구성하고, 팀장 밑에 기획담당, 안전1담당 및 안전2담당을 둔다.

②팀장은 항공서기관으로 보하고, 각 담당은 항공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.

제4조(구성) ①항공안전팀의 팀원은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②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안전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전문인력의 활용 등 항공안전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④항공안전팀에 파견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사무분장) ①팀장은 운항기술국장의 명을 받아 항공안전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기획담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항공안전감독체계 개발
2. 연간 항공안전감독계획의 수립 및 관리
3. 항공안전감독결과의 종합분석 및 보고
4.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
5.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정비조직 인증에 관한 사항
6.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집중점검 및 사고잠재요인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
7.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
8. 기타 운항기술국장이 지시하는 사항

③안전1담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주)대한항공에 대한 상시 안전감독 수행
2. (주)대한항공에 대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·신고수리에 관한 사항
3. (주)대한항공의 운영기준 인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운항기술국장이 지시하는 사항

④안전2담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아시아나항공(주)에 대한 상시 안전감독 수행
2. 아시아나항공(주)에 대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·신고수리에 관한 사항
3. 아시아나항공(주)의 운영기준 인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운항기술국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6조(수당 등)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팀에 파견된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)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항공안전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: 항공안전팀 정원(제4조관련)

구분	계	1급	2급	3급	4급
계	19	1	3	5	10
팀장	1	1			
기획담당	2		1	1	
안전 1 담당	8		1	2	5
안전 2 담당	8		1	2	5